

종합소득세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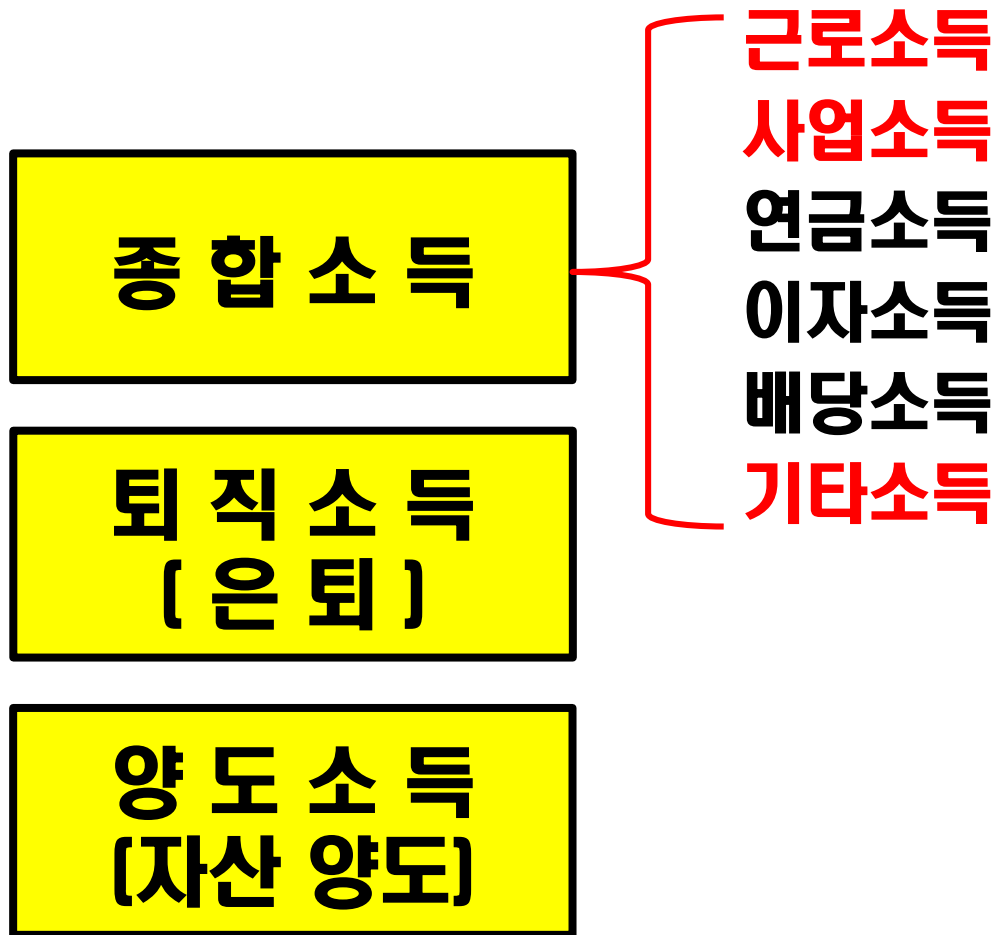
(2019/5/8~9)

공인회계사 최호윤
(ngo114@gmail.com)

- 소득 종류(근로/종교인소득)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소득지급자인 **교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교회가 안하는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
- 예외적 **반기 납부** [but 승인신청 필요]
- 종교인소득과 종교단체활동비 구분.기록
- 규약 또는 승인받은 지급기준에 따른 활동비 지급액 비과세
- 종교인소득 조사시
 - **종교인소득에 한정**하는 규정 명문화
 - 자기시정 사전 안내절차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액조건표 방식으로
-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인정
- 독립적입장인 **기타소득의 부대경비도 비과세소득**으로 제외
 - ✓ 학자금
 - ✓ 식사 또는 식사대
 - ✓ 자녀 출산/육아 수당
 - ✓ 사택을 제공 받는 이익
 - ✓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여비, 차량유지비, 의복, 물품 등)
- 기타소득인 경우도 퇴직소득을 인정하고 있다.

소득분류체계



소득분류속성

	특정 조직 소속	독립적 입장
계속반복성	근로소득 [정규직]	사업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일용직]	기타소득

근로소득 vs 기타소득: 관련 세법 규정

- **근로소득(소법 20조)**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근로자소득'이 아니라 '근로/일/노동으로 인한 소득'이다.

- **기타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소법 21조)**
 - (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 행정사무원, 시설관리사찰 담당자는 해당 없음.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법 21조 3항)**

- **신고 대상자**
 - ①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교회가 연말 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 필요
 - ② 소속 교회 이외 다른 기관에서 강사비 등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방식**
 - ① 홈택스 작성 & 전자 접수 or
 - ② 서면 작성 & 방문/우편 접수
- **신고와 납부 기한**
 - 소득세: ~5월 31일
 - 지방소득세: ~5월 31일(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

- **종교관련종사자 (소득세법 12조 5호 아목)**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구분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승려(24813): (불교)
		교무(24814): (원불교)
		그외 성직자(24819): 기타 종교 관련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24891): (천주교)
		전도사 (24892):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기타종교관련종사자 (선교사)

- **종교단체 (소득세법시행령 41조 15항)**
 -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비과세 소득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근로소득 (소득세법 12조 3호, 령12, 령17조의2)	종교인(기타)소득 (소득세법 12조 5호, 령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만원 이하 식대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납입할 금액 한도) ➢ 법정 '교회 부담분' 사회보험료 ➢ 교회 '소유 또는 직접 임차' 주택을 무상 사용 (소칙15조의2) ➢ 실비 변상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 숙직비, 여비 •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 특수한 역무에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0만원 이하 식대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납입할 금액 한도) ➢ ??? ➢ 교회 '소유 또는 직접 임차' 주택을 무상 사용 ➢ 실비 변상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 숙직비, 여비 •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 특수한 역무에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공통)소득금액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도 포함

- 배우자공제(150만원)
- 부양가족공제(150만원):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1998.01.01. 이후 출생)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2001.01.01. 이후 출생)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58.12.31. 이전 출생)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1948.12.31. 이전 출생):
(공제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판단)
- 장애인 공제(200만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내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50만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
 - 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 ②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과세 체계: 근로소득 vs 종교인(기타)소득

과세체계

- 총수입금액 (=수령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전액)	
	특별공제 조특법	건강,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신용카드 등, 장기펀드 저축액
		창업투자, 개인연금저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 74만원)	
	자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60만원)	
	연금계좌(12%, 400만원)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법정, 지정, 정치)
표준세액공제		

근로 소득

종교인(기타) 소득

근로소득공제
(2~70%)

필요경비
(20~80%)

X
X
X

X

X

(13만원)

(7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원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원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원활

홈택스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or
홈택스 ID로 로그인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화면(단순경비를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자 신고서)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서 작성하기」로,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로 연결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장려금 미리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설정



사용자인증 방법을 선택하세요.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홈택스 제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자동채움 내역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증할 수 있고, 세가지 인증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자동채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교회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경우
이미 신고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
교회 소득만 있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무시해도 무방**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시작 버튼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안내유형이 F,G,H 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3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

정기신고 작성

경정청구작성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 신고 안내유형이 Q,R 인 경우

2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① 소속 교회 사례비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

② :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③ 소속 교회 사례비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확인/등록

-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 정보를 확인
- ② 사용자 인증한 경우 '불러오기' 버튼으로 교회가 제공한 내역 불러옴
- ③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서 다음화면으로 이동

➔ 기본정보 입력

-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확인을 클릭후 '근무지별 소득명세'를 클릭하세요.
- 세대주여부, 내외국인, 거주구분을 입력하여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 기본사항

귀속년도	2018	주민등록번호	☐ - ●●●●	조회	성명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연말정산 불러오기	※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소							
세대주 여부	Y	내·외국인	내국인				
거주구분	거주자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확인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급여정보 등록)

- ① '입력/수정하기'하기 버튼을 눌러 교회에서 수령한 금액 입력할 팝업 생성
- ② 고유번호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교회정보 확인
- ③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급여 금액과 상여 금액, 원천징수세액을 등록

● 근무지별 소득명세

※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21)종급여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 입력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9. 근무처명	<input type="text" value="교회"/>				
10. 사업자등록번호	106 - 82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13. 급여	<input type="text" value="36,000,000"/>	14. 상여	<input type="text" value="4,000,000"/>		
15. 인정상여	<input type="text" value="0"/>	15-1. 주식매수선택권행사 이익	<input type="text" value="0"/>		
15-2.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input type="text" value="0"/>	15-3. 임원퇴직소득금액한도 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0"/>		
16. 계	<input type="text" value="40,000,000"/>	원천징수명수증상결정세액 소득세	<input type="text" value="0"/>		
원천징수명수증상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	<input type="text" value="0"/>	원천징수명수증상결정세액 지방소득세	<input type="text" value="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 ① '입력/수정하기'하기 버튼을 눌러 가족 인적사항 등록 창(팝업) 생성
- ② 필요 정보 기록하고 '등록하기' 버튼과 '추가입력' 버튼으로 등록

▶ 인적공제 명세

※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입력/수정하기	
24. 본인	1,500,000	28. 장애인	0 명		0
25. 배우자	0	29. 부녀자			0
26. 부양가족	0 명	30. 한부모가족			0
27. 경로우대	0 명	소계			1,500,000

①

▶ 인적공제 입력

추가입력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성명	<input type="text"/>	내국인	내국인 <input type="button" value="v"/>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관계	소득자 본인 <input type="button" value="v"/>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등록하기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선택내용수정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성별 (남:01,여)	나이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text"/> -1*****	최***	소득자 본인	Y	N	N	N	N	01	50	19 N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32. 공무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군인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비거치식대출
별정우체국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계산기	0		
고용보험료	0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 14년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계산하기	0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그 밖의 대출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① 직접 입력하거나
- ② 계산기 버튼으로 별도 입력창에서 '공제할 금액' 입력, '공제한도' 계산해서 공제액을 신고서에 반영

▶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①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0	
32. 공무원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0	
군인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0	
별정우체국연금	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0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input type="button" value="계산기"/> ②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비거치식대출	0	
고용보험료	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0	10년 ~ 14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0
			그 밖의 대출	0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① 본인 부담분 국민연금 불입액을 기록
(교단연금 불입액은 해당 안됨)

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1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1년이전 차입분	차입금 이자상환액 10년~14년 <input type="text" value="0"/> 차입금 이자상환액 15년~29년 <input type="text" value="0"/> 차입금 이자상환액 30년 이상 <input type="text" value="0"/>
32. 공무원연금	<input type="text" value="0"/>	장기주택저당차입 금이자상환액 2012년이후 차입분 (15년이상)	차입금 이자상환액 고정, 비거치식대출 <input type="text" value="0"/> 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대출 <input type="text" value="0"/>
군인연금	<input type="text" value="0"/>	장기주택 저당차입 금이자상 환액 2015년 이후 차입분	10년 ~ 14년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input type="text" value="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input type="text" value="0"/>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input type="text" value="0"/> 고정금리가거나, 비거치상환대출 <input type="text" value="0"/> 그 밖의 대출 <input type="text" value="0"/>
별정우체국연금	<input type="text" value="0"/>	35. 기부금(이월분)	<input type="text" value="0"/>
2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input type="text" value="계산기"/>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input type="text" value="0"/>
고용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0"/>	37. 차감소득금액	27,250,00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input type="text" value="계산하기"/>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input type="text" value="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① 건강보험료 연간 납입액을 등록
- 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 금액을 계산
- ③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에 반영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1,200,00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input type="text" value="0"/>
③ 소계(① + ②)	1,200,00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1,200,00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input type="text" value="0"/>
③ 소계(① + ②)	1,200,000
공제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1,200,000"/>
세액공제액	1,200,000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23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기타 및 특별공제)

- ① 주택관련 차입금 원리금 상환 내역을 등록
- ② 계산하기,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금액 계산 후 신고서 반영

-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금)

(단위 : 원)

구분	대상금액	공제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input type="text" value="0"/>	0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거주자 (직접 입력)	<input type="text" value="0"/>	0
소계	0	0

-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단위 : 원)

항목		① 대상금액	공제금액
2011년이전차입분	10년~14년 (6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0"/>	0
	15~29년 (1,0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0"/>	0
	30년 이상 (1,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0"/>	0
2012년이후차입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0"/>	0
	기타대출 (500만원한도)	<input type="text" value="0"/>	0
2015년이후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대출 (1,8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0"/>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1,5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0"/>
		그밖의 대출 (5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0"/>
	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대출 (300만원 한도)	<input type="text" value="0"/>
소계		0	0

②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그 밖의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input type="text" value="0"/>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input type="text" value="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40. 주택마련저축 계산기 도움말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귀속까지 해당)	<input type="text" value="0"/>
청약저축	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0
41.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기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단위: 원) **계산하기**

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공제금액
청약저축	<input type="radio"/> 2015.1.1.이후 가입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radio"/> 2014.12.31.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	<input type="radio"/> 2015.1.1.이후 가입	<input type="text" value="0"/>	0
	<input type="radio"/> 2014.12.31.이전 가입		
근로자주택마련저축		<input type="text" value="0"/>	0
합계		0	0

닫기 **적용하기**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그 밖의 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42.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계산기	0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	0
40. 주택마련저축 계산기 도움말	480,00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귀속까지 해당)	0
청약저축	480,00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0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6. 그 밖의 소득공제 계	480,000
41.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기 도움말	0		

* 귀속년도: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자료제공 동의여부	합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
					금액					
총 급여액					40,000,000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합계					0					
① 전통시장 사용액					0					
② 대중교통 이용액					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0					
④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					0					
합계					0					
⑤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도서·공연		0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도서·공연		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산출세액)

① 입력한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자동 계산 됨

▶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 원)

구분	금액
47.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도움말"/>	0
48. 종합소득 과세표준	① 24,265,000
49. 산출세액	① 2,559,750

▶ 세액감면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50.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	<input type="text" value="0"/>	53.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input type="text" value="0"/>
5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input type="text" value="0"/>	54. 세액감면 계	0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input type="text" value="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① 항목별로 직접 입력하거나 '계산기' 버튼을 눌러 등록

○ 세액공제

(단위: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 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5. 근로소득		684,000	63. 기부금		0
56. 공제대상자녀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명	0	기부금조정명세서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첫째	0	63-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input type="checkbox"/> 둘째		63-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63-3. 법정기부금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명		63-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연금계좌 계산기	0	0	63-5. 지정기부금	0	0
57. 과학기술인공제	0	0	64. 특별세액공제 계 (60+ ~ + 63)	0	0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0	65. 표준세액공제 도움말		0
59. 연금저축	0	0	66. 납세조합공제		<input type="text" value="0"/>
60. 보장성보험료 계산기	0	0	67. 주택차입금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일반 보장성	0	0	68. 외국납부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0	69.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0
61. 의료비 계산기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62. 교육비 계산기	0	0	70. 세액공제 계		694,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 ① '불러오기' 버튼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보험 납입액을 직접 등록
- ② 계산하기와 적용하기 버튼으로 계산후 신고서 반영 함

60. 보장성보험료 **계산기**

귀속년도

2018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2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3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4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7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8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9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1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월

	성명(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관계	납입금액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단위:원)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1,200,00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③ 소계 (① + ②)					1,200,00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61. 의료비

62. 교육비

* 귀속년도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지출금액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① 총 급여	40,000,000		
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2,500,000		
③ 난임시술비	0		
④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0		
⑤ 소계(② + ③ + ④)	2,500,000		
공제대상금액	1,300,000		
세액공제액	195,00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61. 의료비

62. 교육비



* 귀속년도 201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nput type="checkbox"/>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공제종류구분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input type="button" value="교육비 불러오기"/> <input type="button" value="가족입력 추가"/> <input type="button" value="가족입력 삭제"/>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소득자 본인							0
장애인 특수교육비							0
가족 1	취학전 아동		<input type="button" value="v"/>			0	
가족 2	취학전 아동		<input type="button" value="v"/>			0	
소득자본인 공제대상금액							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 ①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등록
- ② 하단 공제한도금액내용으로 공제금액과 이월금액 각각 등록

63. 기부금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내역

* 기부유형	종교단체지정기부금	기부연도	2018
13. 기부금 합계금액	9,000,000	*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9,0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9,0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	2,875,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6,125,000

등록하기

취소하기

종합소득금액 28,750,000

구분	기부금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필요경비	소득·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0	28,750,000			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0		0
법정기부금 (이월)			0	0	0
법정기부금 (당해)	0	28,750,000	0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8,625,000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이월)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당해)	0	3,875,000			1,000,00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월)			0	0	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당해)			0		2,875,000

닫기

입력완료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세액공제)

▶ 세액공제

(단위: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 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5. 근로소득		684,000	63. 기부금		581,250
56. 공제대상자녀 <input type="text" value="0"/> 명		0	<input type="text" value="0"/> 기부금조정명세서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명		0	63-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0	63-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0	63-3. 법정기부금	0	0
연금계좌 <input type="text" value="0"/> 계산기		0	63-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57. 과학기술인공제		0	63-5. 지정기부금	3,875,000	581,250
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64. 특별세액공제 계 (60+ ~ + 63)	8,175,000	1,226,250
59. 연금저축		0	65. <input type="text" value="0"/> 표준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0"/> 도움말		0
60. 보장성보험료 <input type="text" value="0"/> 계산기		0	66. 납세조합공제		0
일반 보장성		0	67. 주택차입금 <input type="text" value="0"/> 도움말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68. 외국납부 <input type="text" value="0"/> 도움말		0
61. 의료비 <input type="text" value="1,300,000"/> 계산기	1,300,000	195,000	69.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text" value="0"/> 도움말	0	0
62. 교육비 <input type="text" value="3,000,000"/> 계산기	3,000,000	45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70. 세액공제 계		1,920,250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13만 원을 공제함

월세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임차한 경우 월세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작성 완료]

- ① 결정세액과 납부세액 등 확인한 후
- ②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신고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 납부(환급)세액

※ 아래의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 근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 클릭후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서 입력합니다.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1. 결정세액(49-54-70)	639,500	63,950	0
72.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0	0	0
73. 차감납부할 세액(71-72)	639,500	63,950	0
74.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75.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0		0
76.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639,500	63,950	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 7조, 「지방세법」 제 95조 및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① 근로소득으로 신고

● 03: 신고서 제출

- ①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 최종 신고할 내용을 확인한 후
- ②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 제출 함

➔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최*** (6[]*****)		
귀속년도	2018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28,750,000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24,265,000	24,265,000	0
산출세액	2,559,750	255,975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639,500	63,95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639,500	63,950	0

➤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1: 기본사항 확인/등록

- ①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지 정보를 확인
- ② 전자메일, 주소지 전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
(주소지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중 하나는 필수값으로 입력)
- ③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서 다음화면으로 이동

➔ 기본정보 입력

➤ 기본사항

귀속년도	2018 <input type="button" value="v"/>	주민등록번호	64 <input type="text"/> - ●●●●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새로작성하기"/>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서 불러오기"/>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전자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button" value="v"/>			
주소지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 전화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거주구분	거주자 <input type="button" value="v"/>	내·외국인	내국인 <input type="button" value="v"/>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 ① '종교인소득명세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교회정보'와 '수령한 금액'을 입력하는 입력창 생성

➔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입력내용 저장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

➤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	-------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소득자료 등록)

- ① 불러오기 버튼으로 교회가 제출한 내역을 불러 오거나
- ② 교회 고유번호, 수령한 수입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
 - 고유번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으로 교회 명칭 확인
 - **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수령액**을 의미
 -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수입금액을 등록 &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

·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①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종교단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수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	------	-------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0"/>	(77) 필요경비	<input type="text" value="0"/>	(78) 소득금액	<input type="text" value="0"/>
------------	--------------------------------	-----------	--------------------------------	-----------	--------------------------------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 ① 본인 이외 추가 공제대상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입력'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자 등록화면에서 등록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①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최***	1	<input type="text"/> *****

> 인적공제 금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5) 본인	1,500,000 원	(39) 장애인	0 명 0 원
(36) 배우자	0 원	(40) 부녀자	0 원
(37) 부양가족	0 명 0 원	(41) 한부모가족	0 원
(38) 경로우대자	0 명 0 원	인적공제 계(35~41)	1,500,00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인적공제)

- ①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 또는 삭제 버튼으로 공제대상 인원 추가/삭제
- ② 생성된 줄에서 주민번호와 공제대상자 속성을 기록
- ③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

인적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해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①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최***	소득자 본인	Y	N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선택---	N	N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③

닫기 입력완료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 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 불입액을 기재
(교단 연금은 해당 사항 없음.)
- ② 기부금(이월분)소득공제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없음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계산하기"/>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0,500,000 원
(48) 세율		6.00 %
(49) 산출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630,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0,00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기부금)

① '기부금 명세서' 버튼 눌러 기부금 내역 등록화면으로 이동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0 원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원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①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540,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2: 종교인소득세 신고서 입력 (기부금)

- ①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 내역을 등록
- ② 하단의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 화면으로 한도초과 금액 확인
- ③ (조정명세) 추가 버튼을 눌러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월액)을 등록

기부금명세서

1
(단위:원)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대상금액	공제제외 기부금		기부금합계
						기부장려금	기타		
종교단체	현금	조	청***	1	4,000,000	0	0	4,000,000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입력된 자료는 '기부코드' 별로 합산되어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입력됩니다.

3
(단위: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종교단체 지정	2018	4,000,000	0	4,000,000	0	0	4,000,000	0	0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닫기

2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펼치기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① 기부금 납입액과 하단의 공제한도금액을 공제금액 120만원으로 기재
- ② 한도 초과한 금액 280만원을 이월금액으로 기재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원)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1	종교단체 지정	2018	4,000,000	0	4,000,000	0	120만원	0	280만원

- '기부금 조정명세 추가'를 클릭하면 추가로 기부금 이월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자동입력된 자료는 해당연도 기부명세에서 수정/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이월금 입력 시 기부금 코드와 기부년도 별로 기부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닫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내역 알림 접기

종합소득금액 12,000,000

구분	기부금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필요경비	소득·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0	12,000,000			0
정치자금 10만원 초과			0		0
법정기부금(이월)	0	12,000,000	0	0	0
법정기부금(당해)			0		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3,600,000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월)			0	0	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당해)	0	1,200,000	0		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월)			0	0	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당해)			0		1,200,000

400만원 - 120만원 = 280만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① 적용된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을 확인
- ②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7만원을 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1,200,000 원	180,00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360,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63) 총결정세액 : (58) + (59)	360,000 원
기납부 세액 (64) 원천징수세액	0 원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63) - (64)	360,000 원

▶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66)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47)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500,000 원
(67) 세율	0.60 %
(68) 산출세액 : (66) x (67) - 누진공제액	63,000 원
(69) 세액공제·감면 : (50) x 10%	27,000 원
(70) 가산세액	0 원
(71)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64) x 10%	0 원
(7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68)-(69)+(70)-(71)	36,000 원

※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말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② 종교인(기타)소득으로 신고

● 03: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최*** (<input type="text"/> *****)		
귀속년도	2018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12,000,000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10,500,000	10,500,000	0
산출세액	630,000	63,00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360,000	36,00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360,000	36,000	0

➤ 환금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복수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3 복수소득으로 신고

01: 기본사항

신고인 기본사항

새로작성하기

신고서불러오기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 단체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단체(종중)		개인 또는 단체(종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귀속 년도	2018	납세자 번호	<input type="text"/> - ●●●●●●	조회	성명 최***
주소	도로명 주소: 경기도 <input type="text"/> 지번 주소: 경기도 <input type="text"/>				
주소지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사업장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 전화	01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자 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input type="text"/>		
내 외국인	내국인	거주 구분	거주자	거주 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text"/>
신고 유형	-선택-	기장 의무	비사업자	신고 구분	정기(확정)
장애인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비장애인이 "예"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내역 조회)

- 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My NTS' 버튼을 클릭
- ②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버튼을 클릭

HOME **1** My NTS ☆ 즐겨찾기 회 회원정보조회 **로그아웃**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 MyNTS MY NTS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개인

 개인 회 <input type="text"/> 개인사업자 전환 >	현금영수증 카드관리 >	세금신고내역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모범납세자 >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 >	>
나의할일 0 >	세무조사 이력 >	현금영수증사용 금액조회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
전자고지 0 >	>	>	>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내역 조회)

① 지급명세서 보기 컬럼의 '보기'버튼을 눌러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X엑셀 내려받기

귀속년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보기	신고방법
2018	거주자 기타소...	662	2019-02-08		1 보기	홈택스(직접입...
2018	거주자 기타소...	110	2019-02-23		보기	홈택스(직접입...
2018	거주자 기타소...	203	2019-02-26		보기	홈택스(직접입...
2018	거주자 기타소...	129	2019-02-22		보기	홈택스(직접입...

3 복수소득으로 신고

● 02: 소득금액명세

- ① 기본 소득 금액인 근로소득(또는 종교인 소득)을 등록
- ② 외부기관에서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60)'으로 등록

➤ 근로 · 기타(종교인) · 연금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공적 연금소득은 5개 사업자등록번호(219-82-01593 국민연금공단, 106-83-03929 국군재정관리단, 220-82-00935 공무원연금공단, 110-82-05569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6-82-014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 하나는 필히 입력되어야 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

①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한미	사유(선명)
①	소득구분	종교인소득 67	
⑤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 총연금액)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	
		도움말	
소득금액(⑤ - ⑥)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등록하기

②

소득구분	기타소득 60
------	---------

③ 복수소득으로 신고

● 공제사항 등록과 신고서 제출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시
작성하는
공제사항등록 절차와 동일

④ 신고 내역과 납부서 확인

- ① 신고 초기화면의 '신고내역' 탭을 클릭하여 신고된 내역을 확인
- ②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한 신고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음
- ③ '납부서'를 클릭하면 계좌이체할 수 있는 납부서 출력할 수 있음

Step 1. 세금신고
1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까이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기] 후, 접수증(보기)을 선택하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한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 1년 범위로 조회 가능합니다.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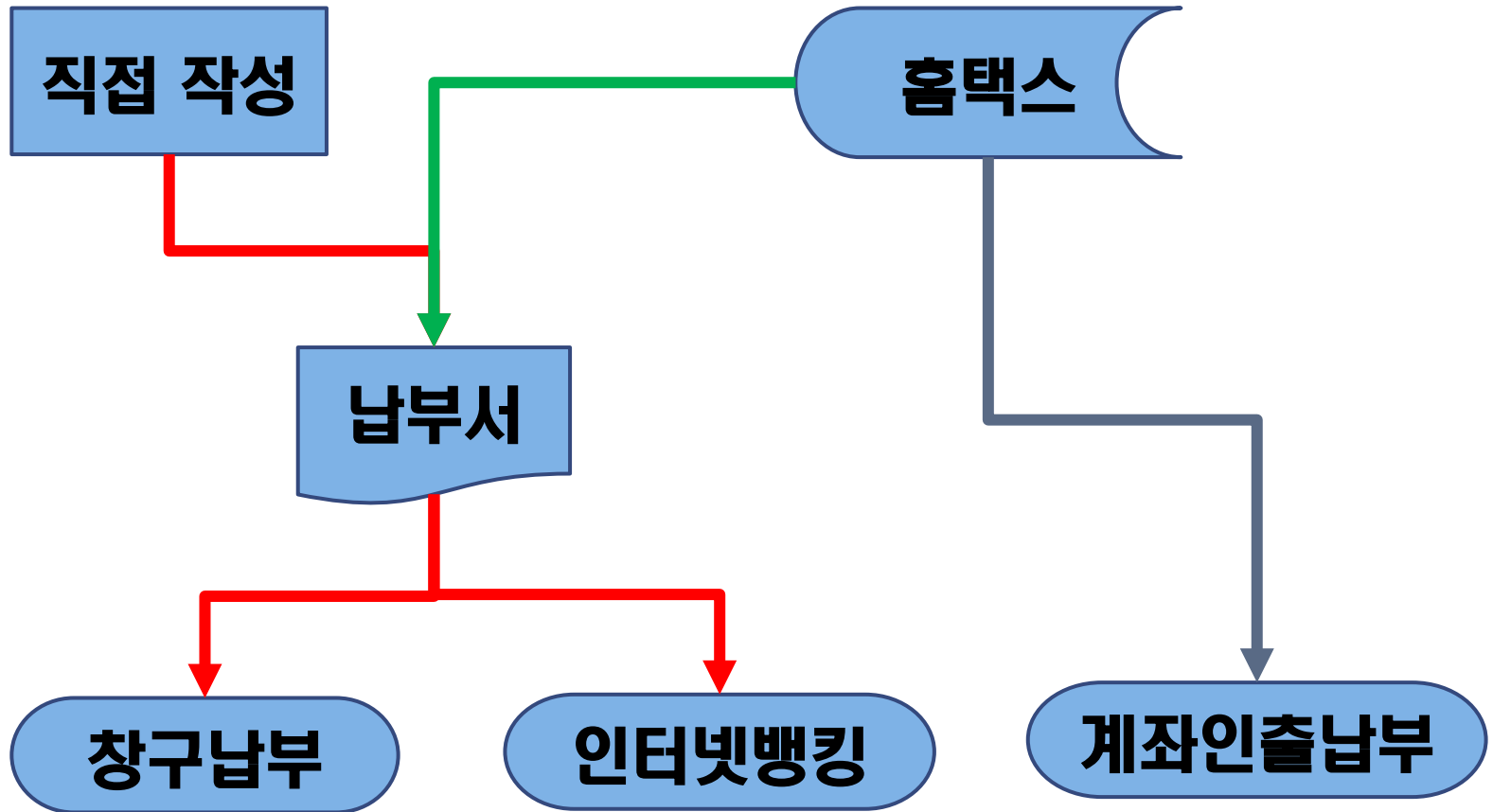
총 0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 건 ▾ 확인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ID	부속서류 제출여부

2

3

55



≡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를 눌렀을때 납부가 안된다면
 - ① 도구-인터넷옵션-보안-실패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한 후
 - '이영역에 있는 모든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 필요'의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hometax.go.kr과 *.giro.or.kr를 웹사이트에 추가
 - ② 그래도 납부가 안되면 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고객용-인터넷지도를 클릭하여 설치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한 후 다시 시도
- 납부를 완료한 후에 결과확인은 반드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인지세의 경우 최근에 신고한 건이 아래쪽에 조회됩니다.

조회하기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 납부할 건수 : 1 건 • 납부할 세액 **0 원**

총 1건의 납부해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관서명(관서코드)	과세구분	세목	귀속년도	납부기한	납부할세액	납부세액	담당자	전자납부번호
<input type="checkbox"/>	웅산(106)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2015	2015-10-26	3,612,730	<input type="text"/>	김현(0...	0126-1510-3-41-83046511

• 이용안내

- 인터넷 세금신고 자료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후에는 신고한 납부정보는 신고당일에만 서비스)
-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워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결과확인과 납부확인서출력은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납부내역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기

납부서 출력

가상계좌번호 SMS 전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기 (2018년 귀속 소득분)**
 - **정기: 2019/5/1 ~ 5/31**
 - **기한후: 2019/6/1 ~ 12/2**
- **지급시기(2018년 귀속 소득분)**
 - **정기: 9월말까지 지급**
- **허위 신청사:**
 - **고의, 중과실: 2년간 지급제한**
 - **사기, 부정: 5년간 지급제한**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단독가구: 2,000만원 (<=3~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6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600만원 (<=3~36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홑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배우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을 것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홑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7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7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홑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배우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 바로가기 >
---	--	---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화면(단순경비를 추계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종교인소득자 신고서)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간편신청서 작성하기」로, 신청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일반신청서 작성하기」로 연결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장려금 미리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설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도움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를 안받은 경우)

사전에약 신청
(~4.30. 까지)

첨부서류제출

> 조회하기

근로 · 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
발송여부조회

접수내역확인
및 신청취소

> 신청 전 자기 검증

근로 ·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 취소

> 안내사항

제도안내

자주묻는질문

현지접수창구안내

전자신청체험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정보작성 > 신청확인및전송

- ① 가구원명세는 2018/12/31 기준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동거 가족을 기록
-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가족 정보 조회되며,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삭제

신청자 기본사항

귀속년도	2018	성명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주소	우편번호	<input type="text"/>	주소검색			
	경기도 <input type="text"/> 차아파트)					
	건물명 (아파트, 상가)	<input type="text"/> 차아파트	<input type="text"/> 동 (<input type="text"/> 층)	<input type="text"/> 호		
유선전화	02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전화번호	010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전자우편주소	ms*	@ <input type="text"/> .c	직접입력	↓	결정통지서수령방법	우편물

※ 연락처 :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반드시 1개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명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상이자 여부	삭제
배우자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	아니오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자녀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	아니오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기타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	아니오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기타 <input type="button" value="↓"/>	***	<input type="text"/> - *****	아니오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자녀세액공제금액 0 원 70세이상 부모부양 여부 예 아니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작성 > 계좌정보작성 > 신청확인및전송

- ① 조회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금액을 수정 / 항목 삭제
- ② '소득'은 비과세소득 제외한 수입금액을 의미 (필요경비 공제 전)
- ③ '소득' 금액을 수정한 경우 소득 증거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 필요

근로소득 명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근로소득)	삭제
본인	214-86-155**	삼화*****	800,000	27,000,000	삭제
본인	205-82-022**	경희*****	760,000	1,760,000	삭제
합계			560,000	28,760,000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종교인소득)	삭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합계			0	0	

사업소득 명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여기를 눌러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추가

소득자	원천징수 여부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발생처 상호(법인)명	국세청자료	확인금액 (총수입금액)	업종	조정률 (%)	사업소득	삭제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4-82-052**	(사*****	517,064	517,064	인적용역	940911	465,357	삭제
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1-86-312**	주식*****	1,000,000	1,000,000	인적용역	940909	900,000	삭제
합계				1,517,064	1,517,064			1,365,357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 등

30,125,357 원

메인화면가기

이전단계

다음단계

종료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① 신청자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추가

임차인	임대인 성명	임대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종류	전세금 (임차보증금)	월세	무상임차 여부	삭제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합계					0	0		
재산 요건	상기 전세금 포함하여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오
	상기 전세금 포함하여 2018.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사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전세금(임차보증금) 추가

임차인	최***	본인
임대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임대인성명		
소재지	주소검색	
상세주소	건물명 (아파트, 상가)	동 (층) 호
종류	주택	
전세금 (임차보증금)	0	월세 0
무상임차여부	아니오	

닫기 추가

가기 이전단계 다음단계 종료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정보작성>신청확인및전송

- ① 신청자 명의 계좌 송금 or 우체국 방문 수령 중 선택
- ②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

계좌정보

수령방법선택 **1** 신청자 예금계좌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최*** 2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실제 장려금 지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귀하의 소득·재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감액 내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자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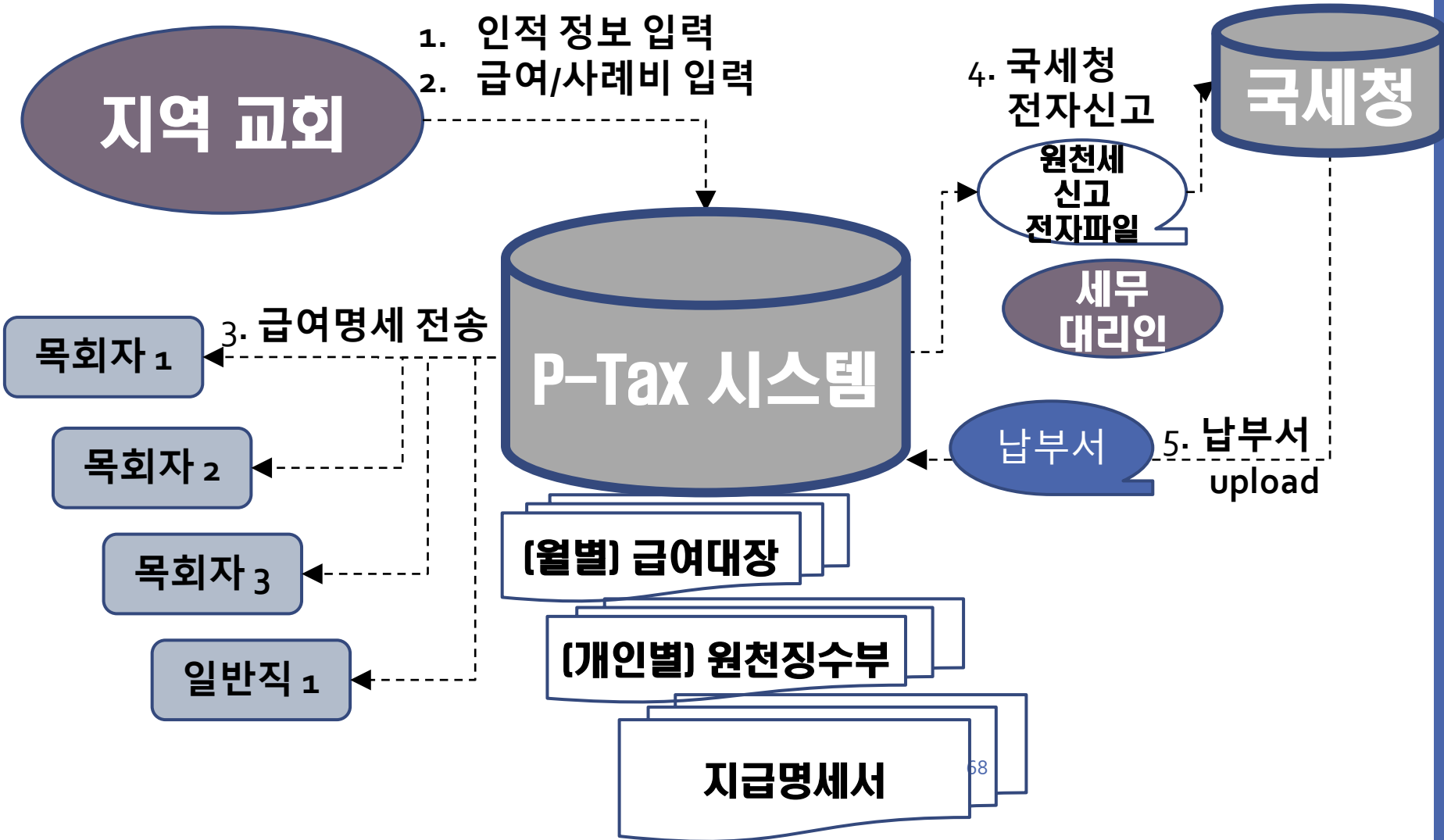
* 위 내용을 확인하십니까? 예 아니오

메인화면가기

이전단계

3 신청하기

종료하기



Q & A